

2차 실기시험 예상문제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필답 : 20문항 출제, 50점 만점)

▲ 농산물 품질관리법규

1.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포장규격의 항목을 쓰라.(7항목)
  - 1) 거래단위
  - 2) 포장치수
  -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4) 포장방법
  - 5) 포장설계
  - 6) 표시사항
  - 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2.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품위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등급규격에 포함되는 항목 (7항목)
  - 1) 수량
  - 2) 크기
  - 3) 형태
  - 4) 색깔
  - 5) 신선도
  - 6) 건조도
  - 7)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3. 표준규격품의 겉포장 표시사항은?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하는 때는 당해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품목
  - 2) 산지
  - 3) 품종(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4) 생산년도 (곡류에 한한다.)

- 5) 등급
  - 6) 무게
  -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4. 표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5. 발수도 R6 이상의 포장재로 포장되어야 할 농산물을 적으시오.
 

5kg 미만
  6. 포장재료 중 골판지 상자를 내용물의 무게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시오.
    - 1) 2kg 미만 : 양면골판지 1종
    - 2) 2kg 이상 10kg 미만 : 양면골판지 2종
    - 3) 10kg 이상 15kg 미만 : 이중양면골판지 1종
    - 4) 15kg 이상 : 이중양면골판지 2종
  7. 농산물의 포장은 몇kg 미만의 농산물을 포장할 때 거래단위와 다른 단위를 적용할 수 있는가?
 

5kg 미만
  8. 농산물용 T-11 팻릿의 규격은?
 

1,100mm x 1,100mm x 150mm(H)
  9. 농산물 적재용 골판지 상자의 치수중 높이는 해당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다만 화훼류 중 절화류의 골판지 상자 높이는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300mm 이내
  10. 농산물 포장재료의 종류를 쓰라(7종류)
    - 1) 골판지 상자,
    - 2) 지대
    - 3) 폴리에틸렌대 (PE)
    - 4) 직물제포대(PP)
    - 5) 그물망
    - 6) 플라스틱상자
    - 7) 다단식 목재 상자·금속재 상자
  11. 그물망, P.E, P.P대의 포장치수 중 길이와 너비의 허용범위는?
 

길이 : ± 10%,      너비 : ± 10mm
  12.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와 너비의

- 허용범위는?  
± 2.5 %
13. 지대의 포장치수 중, 길이와 너비의 허용 범위는?  
± 5mm
14.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 중,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허용범위는?  
길이, 너비 및 높이의 ± 3mm
15. PE대( 폴리에틸렌대)의 표시단량 별 두께를 쓰라.  
1) 5kg 미만 : 0.03mm 이상  
2) 5kg 이상 10 kg 미만 : 0.05mm 이상  
3) 10kg 이상 15kg 미만 : 0.07mm 이상  
4) 15kg 이상 : 0.10mm 이상
16.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서 품종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과실류의 종류를 쓰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뽕은감, 홍시, 자두
17.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서 품종명 또는 계통명을 표시하는 채소류의 종류를 쓰라.  
고추, 오이, 호박, 참외, 멜론, 마늘
18.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 품목은 모두 몇 종인가?  
곡 류 : 20종, 과실류:16종, 채소류: 26종, 서류특용작물: 8종,  
버섯류 : 9종, 임산물류 : 9종, 축산물류 : 4종  
총 92종
19.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또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어디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얼마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가?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1년,  
유효기간의 연장은 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하며 연장기간은 1년이다.
20.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정기준에 합당한 품질인증심사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
- 2명 이상
21. 농산물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2. 품질인증품 및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 스티커 )를 부착하거나 ( 표시판 ) 또는 ( 풋말 )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스티커, 표시판, 풋말
23.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동안인가? 또 인증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유효기간 : 1년, 인증연장 기간 : 1년
24. 우수농산물인증 유효기간연장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은?  
1) 일반 농산물 : 인증을 신청한 작물의 재배기간에 유통기간 ( 1 )년, 건조농산물의 경우 ( 2 )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2) 인삼류 : 인증을 신청한 인삼의 재배기간에 유통기간 ( 10 )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삼의 경우 재배기간에 유통기간 ( 1 )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3) 약용작물 : 인증을 신청한 작물의 재배 기간에 유통기간 ( 5 )을 추가한 기간으로 한다.
25. 우수농산물을 출하하고자하는 자는 해당물품의 포장표면에 무엇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1) 로고  
2) 산지  
3) 품목(품종)  
4) 종량·개수  
5) 등급  
6) 생산자(작목반명) 생산자성명 또는 작

목반명, 주소, 전화번호

7) 이력추적관리번호

26. 우수농산물인증품 로고의 글자, 앞사귀모양 및 GAP 모양의 색깔은?  
 1) 글자 : 검정색,  
 2) 앞사귀 : 연두색,  
 3) GAP : 청색
27. 우수농산물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관리의 ( 심벌 로고 ) 와 ( 인증기관 ) 및 ( 인증번호 ) 만 표시할 수 있다.
28.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리적 표시(지리적 표시의 등록)
29.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수농산물 관리(우수농산물 인증제도)
30.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7가지)  
 1) 생산계획서  
 2)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서  
 3)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4)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련설명서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6) 자체품질 기준  
 7) 품질관리계획서
31.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32.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 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 내용은?  
 1) 지리적표시의 명칭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3)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33. 다음의 (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 국내 )로 한다.  
 국내
34.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농산물이력추적관리
35.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산물을 누구에게 등록 하는가?  
 농림부장관
36.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중 등록을 하여야하는 자를 3단계로 나누면?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
37.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을 생산, 유통, 판매의 3단계로 구분하여 쓰라.  
 1) 생산단계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 라. 생산자 전화번호
  - 마. 재배지 위치
  - 바. 재배지 면적
  - 사. 생산계획량
- 2) 유통단계
- 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
  - 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
  - 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
- 3) 판매단계
- 가. 판매처 명칭
  - 나. 판매처 소재지
  - 다. 판매처 전화번호
38.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3년
39.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4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00012」의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A APC의 대표자가 「홍길동 농가가 생산한 딸기 500kg」를 포장하여 2006년 12월 25일 B 마트로 출하하고, A APC가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를 00001로 부여한 경우 이력추적관리번호는?  
이력추적관리번호 : 00012-0600001
41.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 1) 농산물의 주산단지
  - 2) 시설재배단지
  - 3)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4)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5) 저장창고
  - 6) 도매시장
42. 농산물안전성조사를 3단계로 구분하여라.
- 1) 생산단계조사
  - 2) 저장단계조사
  - 3) 출하단계조사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저장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3. 출하단계조사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43.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의 처리방법은?
- 1) 출하연기
  - 2) 용도전환
  - 3) 폐기
44. 농림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은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이나 생산·저장(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항목은?
- 1) 잔류된 농약
  - 2) 중금속
  - 3) 곰팡이독소
  - 4) 식중독균
  - 5) 항생물질
  -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
45. 다음 ( ) 안에 알맞은 말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 판매 )하거나 ( 가공 )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 가공
46.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인정하는 농산물 품목은?

- 1) 표준규격품
- 2) 품질인증품
- 3) 우수농산물인증품
- 4) 이력추적관리품
- 5) 지리적특산품
- 6) 친환경농산물
- 7) 특산물
- 8) 전통식품

47.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는?

- 1) 물 2) 식품첨가물 3) 당류 4) 식염

48. 다음은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사용된 당해원료 중 배합비율이 ( 50 )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이 ( 50 )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 2 )가지의 원료를 표시한다.  
50%, 50%, 2 가지

49. 경북 영양군에서 생산된 고추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 할 때 원산지 표시의 3가지 방법을 모두 쓰라.

고추 (국산), 고추(경북산), 고추(영양산)

50. 다음은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 다만, ( 3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2 )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51. 다음은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 15퍼센트 ) 이하인 때

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 1년 )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52. 다음은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

1.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 3개 )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 국산 )으로 표시
2. 원산지 국가가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 3 )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

53. 가축을 출생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 이때 소, 돼지 및 기타 가축의 경우 얼마동안 사육하여야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는가?

- 1) 소 : 6개월 이상
- 2) 돼지 : 2개월 이상
- 3) 기타 : 1개월 이상

54. 다음 각 항의 원산지를 국산과 수입품으로 나누어 표시하라.

- 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2cm정도)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수입산)
- 2)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국산)
- 3)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 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국산)
- 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수입산)

- 5)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국산)
- 6)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수입산)
- 7) 인삼(장뇌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수입산)
55. 다음의 양념장을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라.  
양념장의 원료배합비율이 『된장40%(미국산콩60%, 미국산밀가루40%), 고추장30%(국산참쌀40%, 중국산고춧가루40%, 미국산밀가루20%), 미국산콩15%, 국산양파5%, 국산마늘5%, 국산고추5%』 일 경우,  
원산지표시 : ( 된장(콩 미국산), 고추장(참쌀 국산, 고추 중국산) )
56.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가?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57.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1) 표시위반물량 : 100톤 이상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 원 이상 (가공품의 경우 20억 원 이상)  
3)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
58.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이다 어떻게 표시하는가?  
1) 유전자변형농산물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

물

-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답

- 1) 유전자변형농산물  
2)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3) 유전자변형농산물포함 가능성 있음

59.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을 검사하는 3가지 경우는?

- 1) 정부나 정부를 대행하여 생산자단체등이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나 정부를 대행하여 생산자단체등이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60. 다음 ( ) 안에 알맞은 말은?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 전수 ) 또는 ( 표본추출 )의 방법에 의하며, 시료의 추출·계측·감정·등급판정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1.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 부터 몇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또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 부터 몇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재검사 이의신청 : 7일 이내

재검사 이의신청결과 통보 : 5일이내

62.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3가지)

-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검사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

- 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때
-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63. 검사를 받은 농산물에 대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2가지는?
- 1)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 2) 검사결과 표시가 명실 또는 불명확하게 된 때
6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3가지
- 1) 농산물의 등급판정
  - 2) 농산물의 출하시기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3)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65.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최고 얼마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200만원
66.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7가지)
- 1)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 3)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4) 표시품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 5) 검사판정의 취소
  - 6)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7)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취소
67. 농산물품질관리법상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68.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의 벌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69. 표준규격품과 비표준규격품을 혼합하여 판매한 경우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0.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로는 얼마인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